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중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으로 위임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제94조제2항제1호 신설)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제외(제94조제4항제1호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3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담금 부과·징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담금 부과·징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 제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 장에게 위임한다. <u><신 설></u> 2. ~ 7. 삭 제 8. · 9. (생 략)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의2. (생 략)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u>부과 · 징수</u> 1의4. ~ 25. (생 략) ⑤ · ⑥ (생 략)	제94조(권한의 위임) ② ----- ----- ----- -----. <u>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담금 부과 · 징수</u> 8.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 <u>부과 · 징수(법 제19 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담금 부과 · 징수는 제외한다)</u> 1의4. ~ 2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305